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70

2023. 9. 19.(화)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3년 8월 28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30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9월 8일

-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제승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사유

○ 충북광역치매센터 충북대학교병원의 위탁기간 만료(2023.12.26.)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적의 수탁기관을 심사·선정 하고자 함.

나. 민간위탁 사유

○ 중앙치매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치매관리사업 계획 및 연구개발, 관련 전문 종사자 육성, 인식개선 홍보 강화를 위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함

다. 現수탁기관 기본현황

○ 수탁기관 : 충북대학교병원(원장: 최영석)

○ 위탁기간 : 2020.12.27. ~ 2023.12.26.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67 지오빌딩 3층(개신동)

○ 조직현황 : 2개팀 9명(센터장1, 사무국장1, 직원7)

라.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2. 27. ~ 2026. 12. 26. (3년)

○ 위탁금액 : 年612백만원(기금70%428, 도비30%184) *23년 예산기준

○ 위탁내용 : 충북광역치매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지원, 치매연구 및 통계관리
- 치매관련 종사인력 교육 및 기술지원, 치매인식개선 홍보 등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수탁선정심의위원회 심사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의 위탁기간 만료(2023.12.26.)에 따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전문성 및 운영능력이 우수한 기관과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충북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90일 이상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기관의 전문성, 사업실적, 사업계획 충실도 등을 심사한 후, 3년의 범위 내에서 협약 체결 및 공증 절차를 거치도록 계획되어 있는 바,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
4.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의 주요사무는 치매연구 및 통계관리, 치매 관련 종사인력 교육,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기술지원 등으로 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을 통해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관련 법률과 조례를 준수하여 제출된 안으로,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

○ 본 동의안의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치매연구 및 통계관리, 치매 관련 종사인력 교육,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는 치매와 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무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참고자료〉

□ **충청북도 치매환자 관리 현황** (2023년 7월말 기준)

(단위 : 명)

시군명	치매환자 등록인원	시군명	치매환자 등록인원
총 계	**23,337**		
청주시 계	9,208	**기타 시군계**	14,129
상당구	2,717	충주시	2,917
서원구	2,213	제천시	1,866
흥덕구	2,157	보은군	1,037
청원구	2,121	옥천군	1,484
		영동군	1,240
		증평군	644
		진천군	1,174
		괴산군	1,107
		음성군	1,801
		단양군	859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70

제출연월일 : 2023년 8월 29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충북광역치매센터 충북대학교병원의 위탁기간 만료(2023.12.26.)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적의 수탁기관을 심사·선정 하고자함

2. 민간위탁사유

○ 중앙치매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치매관리사업 계획 및 연구개발, 관련 전문 종사자 육성, 인식개선 홍보 강화를 위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함

3. 現수탁기관 기본현황

○ 수탁기관 : 충북대학교병원(원장: 최영석)

○ 위탁기간 : 2020.12.27. ~ 2023.12.26.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67 지오빌딩 3층(개신동)

○ 조직현황 : 2개팀 9명(센터장1, 사무국장1, 직원7)

4.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2. 27. ~ 2026. 12. 26. (3년)

○ 위탁금액 : 年612백만원(기금$^{70\%}$428, 도비$^{30\%}$184) *23년 예산기준

○ 위탁내용 : 충북광역치매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지원, 치매연구 및 통계관리
- 치매관련 종사인력 교육 및 기술지원, 치매인식개선 홍보 등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수탁선정심의위원회 심사

5. 참고사항

○ 수탁기관 모집공고(2023. 9. ~ 12.)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2023. 12.)

○ 위·수탁 협약체결(2023. 12.)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위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첨부 :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2의 설치 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 또는 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 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 연장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8.>

④ 제1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
4.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
CHUNGBUK, THE CENTER OF KOREA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재)위탁 추진계획

2023. 7.

충 청 북 도
보건정책과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재)위탁 추진계획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 위탁기간 만료('2023. 12. 26.)에 따라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적의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동 사무를 재위탁 하고자함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위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그간 도 광역치매센터 위·수탁 추진현황>
▪ 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 최초위탁 : 충북대병원 선정('13.12.27. ~ '16.12.26.) ▪ 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 1차 재위탁 : 충북대병원 선정('16.12.27. ~ '19.12.26.) ▪ 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 2차 재위탁 : 충북대병원 선정('19.12.27. ~ '20.12.26.) ▪ 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 3차 재위탁 : 충북대병원 선정('20.12.27. ~ '23.12.26.)

2 위탁개요

○ 위탁대상 :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
○ 위탁기간 : 2023. 12. 27. ~ 2026. 12. 26.(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 자격요건 : 병원급 의료기관(치매관리법 제16조의2)
○ 사업예산 : 612백만원(기금$^{70\%}$428, 도비$^{30\%}$184) ※ 23년기준
  - 매년 복지부에서 정하는 사업비에 의함
○ 주요사무
  - 치매관리시행계획, 치매연구 및 통계관리, 치매관련 종사인력 교육
  -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기술지원, 치매인식개선사업 홍보
  - 치매환자·가족 치매예방교육, 그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치매관련 업무

<現 수탁기관 현황>

- 수탁기관 : 충북대학교병원(원장:최영석)
- 위탁기간 : '20.12.27 ~ '23.12.26(3년간)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67 지오빌딩 3층(개신동)
- 조직현황 : 2개팀 9명(센터장1, 사무국장1, 직원7) **※ 센터장 : 이상수(신경과 교수)**

3 추진절차

① 기본계획	■ 기본계획 수립	'23. 7.
② 수탁공고	■ 수탁기관 모집공고 - 방법 : 공개모집(90일 공고)	'23. 9.~12.
③ 수탁심사	■ 수탁심사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구성 : 6 ~ 9명 - 심사 : 전문성, 사업실적, 사업계획등 - 결정 : 최고 득점자 선정	'23.12.
④ 협약체결	■ 협약체결 및 공증	'23.12.
⑤ 사무개시	■ 위·수탁 사무개시	'23.12.27.

※ 도의회 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 9월

- *의회의 동의를 받은때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의회동의 받아야함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4 세부 추진계획

1 수탁기관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3.9. ~ 12.(90일)

○ 공고방법 : 도 홈페이지 공고

○ 신청자격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병원급의료기관

○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정

○ 위탁조건

- 사업공간 확보 및 임대운영 시 임대보증금 수탁기관 부담
- 보조사업비외 추가지원 없음, 복지부 광역치매센터 운영 지침 적용

2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시기 : 2023. 12월중

○ 구성인원 : 6~9명 정도(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
-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업무주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탁사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관계전문가 위촉

○ 심사항목 : 신청기관의 전문성, 사업실적, 사업계획 충실도 등

○ 계획설명 : 공모기관별 20분이내

○ 수탁자선정

- 최고 득점기관이 수탁기관으로 선정
- 공모기관이 1개 기관일 경우, 70점이상·과반수 찬성으로 선정

3 협약체결 및 위·수탁 사무개시

○ 체결시기 : 2023. 12월중

○ 협약서 ☞ 공증실시

- 위탁사무 범위 및 위탁기간, 수탁자 의무, 예산지원 및 집행관리
- 운영인력(고용승계 등), 사업실적보고,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 위·수탁 사무개시 : 2023. 12. 27.

5 향후계획

○ 도의회 동의 : '23.9월

○ 수탁기관 모집공고 : '23.9~12월

○ 수탁기관 심의·평가 및 선정 : '23.12월

○ 협약체결 및 업무개시 : '23.12월